

려 여기 나와있는 公職者들은 자기가 關聯된事業을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 專門家와 地域代表 분들에 의해서 그事業이 보다 나은 效率性을 檢討하는데 큰 機能이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柳準向委員 이것이 면접번에 우리가 審議한 서울市 市政開發研究院인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機構인가요?

○ 委員長 朴尚東 전혀 별개지요.

○ 企劃管理室長 朴宗爾 네, 이것은 法定機構입니다.

○ 委員長 朴尚東 李敏國委員님 理解가 가십니까?

○ 李敏國委員 아니, 그러니까 可否를 물어주세요. 제가 動議한 案件을 賛成하는 委員이 몇 분이며, 李秉守委員이 提議한 案件을 賛成하는 委員이 몇 분인가 可否를 물어서 끝내지요.

○ 委員長 朴尚東 아직 動議案이 成立이 안 되었기 때문에 可否를 물을 수는 없고, 李敏國委員의 質疑에 대한 것을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주셨으니까 委員님께서 理解를 하시게 되면 原案대로 일단 通過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原案에 대해서 異議가 있으시면 조금 더 質疑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李敏國委員님만 양해해 주신다면……. 단순히 여기 機能이라는 것은…….

○ 李敏國委員 여러 委員님들이 아무 異議가 없으시다고 하면 저도 理解하겠습니다.

○ 委員長 朴尚東 네, 알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滿場一致로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権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 재정 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투자관리관, 내무국장,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교통국장, 예산담당관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증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등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p>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관리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록 하겠습니다. 약 1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権 3打)</p>
<p>제7조(실무대책반)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10時 53分 會議中止) (11時 10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尙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開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権 3打)</p>
<p>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企劃管理室所管業務에對한質疑答辯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지난 第53回 臨時會開會時 業務報告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業務報告는 생략하고 企劃管理室所管市政에 관한 質疑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앞서 一問一答式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質疑後 일괄 答辯을 듣는 方法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一問一答式으로 委員 여러분께서 質疑를 하시고 企劃管理室長이 바로 答辯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會議를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 여러분께서 그 동안 지난 번 市政報告資料에 의해서 많이 研究를 하셨고 檢討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市政質疑를 알차게, 深度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李聲九委員님 말씀하시지요.</p>
<p>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李聲九委員 李聲九委員입니다. 지난 해 定期會때 清掃事業本部設置條例案하고 市政開發研究院育成條例案이 議會를通過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清掃事業本部에 附設된 清掃研究所하고 또 市政開發研究院이 內務部 決裁過程에서 被擱置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 자초지종을 먼저 說明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企劃管理室長 朴宗雨 一問一答을 아까 委員長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앉아서 答辯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p>
<p>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지금 李聲九委員님께서 質問해 주신 清掃事業本部는 지난 연말에 委員님들께서 짚은 檢討 끝에 可決해 주셔서 저희가 發足을 했습니다. 發足할 條例를 制定해 주실 당시에</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委員長 朴尙東 感謝합니다. 市政質疑에 대한 것은 한 15分間 停會를 한 이후에 하도</p>	